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貿易學碩士 學位論文

해외직구 마약류 밀수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policy smuggling drugs by overseas direct purchases

指導敎授 權 文 圭

2015 年 7 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國際關稅學科

金 奎 兌

本 論文을 金奎兌의 貿易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유 일 선　(印)

委　員　　정 홍 열　(印)

委　員　　권 문 규　(印)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1945
한국해양대학교

2015年 7月

dCollection

목 차

ABSTRACT ····· i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 4

제1절 해외직구 현황 ····· 4

제2절 마약류 밀수입에 대한 선행연구 ····· 14

제3절 해외직구 관련 특별통관제도 ····· 17

제4절 마약류 밀수입 ····· 22

제5절 국내 마약밀수입 형태 변천사 ····· 26

dCollection

제 3 장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입 사례 ····· 36

제1절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 36

제2절 국제우편 통한 밀수입 단속 사례 ····· 40

제3절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마약류 밀수입 단속시스템 ····· 46

제4절 해외직구 마약류 밀수입 범죄의 개선과제 ····· 53

제 4 장 해외직구 마약류 밀수입 대응방안 ····· 55

제1절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단속기능 강화 ····· 55

제2절 마약류 범죄자 후속 조치 ····· 60

제 5 장 결론 ····· 6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63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 66

참고 문헌 ····· 68

dCollection

<표 목차>

<표 Ⅱ-1> 해외직구 관련 주요 불만 요인 ····· 6
<표 Ⅱ-2> 전자상거래물품 반입동향 통계표 ····· 12
<표 Ⅱ-3>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2014년) ····· 13
<표 Ⅱ-4>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국가 현황 ····· 13
<표 Ⅱ-5> 전자상거래물품 금액대별 통관현황(2014년) ····· 14
<표 Ⅱ-6> 마약류 밀수입에 대한 선행연구 ····· 15
<표 Ⅱ-7> 목록통과 과세범위와 허용 품목 ····· 21
<표 Ⅱ-8> 특송물품의 통관유형 ····· 21
<표 Ⅱ-9> 국내 마약류의 역사 ····· 35
<표 Ⅲ-1>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실적 ····· 38
<표 Ⅲ-2> 마약사범별 단속 현황 ····· 39
<표 Ⅲ-3> 마약류별 단속 현황 ····· 40
<표 Ⅳ-1>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재범 현황 ····· 62

<그림 목차>

<그림 Ⅲ-1>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실적 ····· 38
<그림 Ⅲ-2> 국제우편물 속 티셔츠에 숨겨져 있던 에더럴정 75정 ····· 41
<그림 Ⅲ-3> 국제우편물에 숨겨진 수입된 대마 약 17.6g ····· 43
<그림 Ⅲ-4> 압수 마약류 사진 ····· 44
<그림 Ⅲ-5> 압수 마약류 사진 ····· 45
<그림 Ⅲ-6> 압수 마약류 사진 ····· 46
<그림 Ⅲ-7> 국제우편물 처리 흐름도 ····· 47
<그림 Ⅲ-8> 부산국제우편세관 조직도 ····· 48
<그림 Ⅲ-9>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조직도 ····· 48

Collection

A study on the effective policy smuggling drugs by overseas direct purchases

Kim, Kyu-Ta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ustom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Gwon, Mun-Gyu

ABSTRACT

Recently, expanding the reasonable consumption, overseas direct purchase are emerging as one of the most preferred purchase method.

Overseas direct purchases means consumers purchase products at foreign online shopping malls on internet and have them delivered to their domestic addresses.

These overseas direct purchases have been used since past and even more recent overseas direct purchase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because foreign purchasing agencies or delivery agencies for domestic customers have been sprung up, social media has been spreading, smart consumers and and the activation plan by government for overseas direct purchases have been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the smuggling by the overseas direct purchases have been increasing as much as the overseas direct purchases are increasing.

Reckless smuggling is a dangerous criminal conduct to be able to shake the foundation of national economy and destroy law and order in public.

Smugglers are abusing the overseas direct purchases in order to avoid

Collection

paying tax. Especially, in the case of express cargo,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at it is the official declaration or not when the smugglers make a false declaration. Because the goods can't be opened in real. So illegal overseas direct purchases have been abusing too.

Through this study, the methods or types of the overseas direct purchases are researched in the view of blocking drug supply among smuggling. This study suggests the alternatives to confront smugglers on the main foreign drug supplies to drugs in Korea.

This study was established in two aspects. The first is narcotics smuggling crackdown enhancements through the overseas direct purchases. The second is drug prevention and criminal follow-up provision. That information will be dealt with in more detail in the body.

Narcotics smuggling through the overseas direct purchases. was settled down to a new form of drug offenses. The overseas direct purchases itself simplify customs clearance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supporting policies, such as expanding the range of duty-free. And because anyone can easily conduct criminal, Narcotics smuggling crime through the overseas direct purchases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from day to day.

However, because the drugs smuggled through its the overseas direct purchases made only through a simple Internet search, Diffusion rate and drug addiction problems with the crime has the potential to bring enormous danger to the whole country in the future.

Because control policies on drugs is practically maintenance as well as domestic institutional sector to be supported by cooperation and exchanges between countries, This paper will be of academic value as a guide for potential offenders effective prevention and blocking.

Collection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는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직구, 배대지(배송대행지) 등의 신종줄임말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회현상과 같이 해외직구를 통한 물건의 구매가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해외직구의 증가 원인에는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에 없는 브랜드나 디자인의 구매가 해외직구를 통해 가능해짐에 따라 과거보다 소비자 욕구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SNS나 블로그 등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서로 간의 해외직구 노하우의 전달, 그리고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매가 가능한 해외 쇼핑몰 사이트의 공유 등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오는 특송화물의 면세 혜택을 증가시키고 통관절차를 간소화 한 것들도 해외직구를 증가시킨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개인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분별한 밀수입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밀수출업자들은 해외직구를 관세회피 방안으로 새롭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특송물품의 경우 물건을 허위신고 할지라도 실제 물품을 개봉하여 확인하지 않는 한 신고대로 들어온 것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법적인 해외직구도 증가하고 있다.

Collection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묶음배송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밀수하는 조직이 적발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해외직구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반입되는 물품 중 고질적인 국민안전 침해 물품은 마약류일 것이다. 마약류는 현재 해외직구를 통해서 불법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 중 필로폰·신종마약의 밀수가 급증하였으며, 그 규모 또한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하였는데, 그 중 10대 청소년들도 10명이나 적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마약 청정국가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들어 점차 마약류 밀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밀수 수법과 마약의 종류 또한 신종수법, 신종마약으로 새로워지고 있다.

마약류는 미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지속적인 사용 시 중독성이 생기는 물질로써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키고, 상용하면 혈관수축, 혈압상승 그리고 정신분열 등의 만성중독을 일으켜, 뇌를 손상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입 중 마약류 공급의 차단 측면에서 해외직구의 방법 및 유형을 살펴본다. 다음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수법을 분석하여 해외 주요 마약 공급처로부터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수

Collection

립을 목적으로 하고,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현장면접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마약류 밀수입 및 해외직구에 관한 국내 논문 및 관련 전문서적과 관행물 자료(관세청 자료, 통계청 자료 등)를 바탕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마약류의 정의와 범위, 국내 마약밀수입 형태 변천사, 해외직구의 정의 및 방법 등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 수법과 규모, 단속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마약류 밀수입 단속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차단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및 시사점을 기술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dCollection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해외직구 현황

해외직접구매(overseas direct purchases)는 인터넷이나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하여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1] 즉, 소비자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방식이다. 반면 구매대행은 해외구매를 대신해주는 업체 A에게 소비자 B가 해외에서 사고자 하는 것을 의뢰하면 업체 A가 소비자 B로부터 중간수수료를 받고 직접구매 업무를 대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점에서 구매대행은 해외직구와 차이가 있다.

'배대지'란 배송대행지의 줄임말로서 해외 쇼핑몰들은 대부분 한국 주소로 직배송을 지원하기 보다는 자국 내 주소에만 상품을 배송하는 정책을 편다. 그럴 때는 배송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배대지는 배송 대행업체에 해외직구 소비자가 설정한 현지 주소지다. 즉, 배대지는 배송 대행업체 혹은 그 현지 주소지(들)이다.

배대지의 선택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미국은 각 주마다 '세일즈 택스'(소비세)가 다르기 때문에 배대지 선택에 따라 구매가의 최대 15%까지 가격이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대지 선택에 따라 배송기간이 달라지므로, 물건을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다면, 가급적 쇼핑몰 배송창고와 가까운 배대지를 선택해야 한다.

---

1) 김철호(2014). 해외직구 관련 문제와 개선방안. 무역통상학회지

Collection

1. 해외직구의 장점

일반적으로 해외직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다. 해외로부터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제품의 경우 원래 제품가격에 세금, 중간업체의 마진, 국내 유통업체 마진 등이 추가되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하면 세금, 중간 수수료 등을 절약 가능하여 저렴한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들도 새로운 구매방식에 대한 호기심과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많아지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찾고 이를 공유하는 등 합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로 국내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다양한 디자인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해외제품을 수입할 경우 재고의 부담을 덜기 위해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고 무난한 제품을 수입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 외국브랜드의 다양한 디자인의 선택지가 좁아지게 되지만 해외직구를 할 때는 외국브랜드의 해당 국가 본사를 통한 직접 구매가 가능해지므로 다양한 디자인의 선택이 가능하다.

셋째로 국내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브랜드의 구입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의 수익성 보장이 확실치 않거나 기타의 이유로 우리나라로 진출하지 않은 수입브랜드를 인터넷을 통해 디자인을 확인하고 구매가 가능해지므로 브랜드에 대한 선택의 시야가 넓어진다.

Collection

2. 해외직구의 단점

해외직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로 먼저, 구매한 제품의 반품 및 환불과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 거래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국내 쇼핑몰에서의 거래와 보다 더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거래관련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는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문제, 배송과정에서의 파손, 오송 및 지연에 따른 문제, 제품의 반품 및 환불관련 문제, 거래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문제, 분쟁발생시 해결상의 문제 및 배송과정에서의 분쟁발생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표 II-1] 해외직구 관련 주요 불만 요인

(단위 : 건, %)

불만사유	건 수	비 중
반품 수수료 부당청구	315	29.5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281	26.4
배송지연/오배송/분실	202	19.0
제품불량파손 및 A/S 불가	126	11.8
사업자 연락두절	68	6.4
기 타	74	6.9
합 계	1,066	100.0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14. 3.

Collection

해외직구관련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사유로는 반품 수수료 부당청구, 거래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배송지연, 오·배송 및 분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해외직구의 경우 제품의 반품 및 환불에 따른 반송 및 관세환급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째, 해외직구대행의 경우, 선지급 후배송이라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 쇼핑몰에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은 후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만약 해외 쇼핑몰에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부득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구매를 요청한 물품이 특정 기간 내에 필요한 경우 적기에 물품을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된다.

셋째, 해외직구 관련 분쟁발생시 해결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해외직구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등 준거법 적용 및 재판관할권 적용상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국제거래의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준거법이나 재판관할권에 대하여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외직구와 같은 쇼핑몰을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판매자가 정한 일반거래약관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쇼핑몰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쇼핑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 거래량이나 금액면에서 소량, 소액거래이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하여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당사자 간의 해결방안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Collection

3. 해외직구의 증가 원인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2]를 살펴보면, 최근 국내 온라인쇼핑족 1,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 이용실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4.3%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구매경험 없음 75.7%). 따라서 온라인 쇼핑족 4명 중 1명은 이른바 해외직구를 경험한 '해외직구족(直購族)'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들이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 동일상품보다 싼 가격'(67%)를 들었다. 그 다음 '국내에 없는 브랜드 구매'(37.8%), '다양한 상품 종류'(35%), '우수한 품질'(20.3%) 등을 차례로 꼽았다.

현대사회 인터넷의 발전으로 블로그나 SNS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족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손쉽게 타인에게 제공하고 교류함으로써 공유가 쉬워지고, 직구 사이트들이 구매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이용 편의성이 증가된 점도 해외직구의 증가를 가속화 시킬 수 있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와 면세한도액 상향도 이러한 추세를 거들고 있다.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를 기점으로 미국에서 직접 구매를 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한선이 기존 100달러 이하에서 2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해외직구는 과거부터 이용되어 왔으나, 구매대행업체 및 배송대행업체의 등장과 더불어 소셜 미디어의 이용 확산, 스마트 소비자들의 확산 및 정부의 정책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소비재의 독과점적 수입구조로 인해 수입가격과 판매가격간의 격차가 크고, 국

2) 대한상공회의소(2014). 해외직구 이용 실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Collection

내 판매가격이 외국의 판매가격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해외직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요 소비재의 수입구조가 독과점적 구조임에도 병행수입이나 해외직구 등 대안수입 비중이 전체 소비재 수입액 중 5% 수준에 불과하여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입소비재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병행수입, 해외직구 등 대안수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2014년 4월에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편의제고를 위해 해외직구 대상품목의 확대와 특별통관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한편, 해외직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및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해외직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안정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3)]

국내 소비시장의 개방도가 낮다는 점 또한 해외직구의 증가원인으로 들 수 있다. 2011년 기준 국내 소비재 시장의 경우 수입비중이 9.8%로 미국의 23.7%, 일본의 31.6%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4)] 이처럼 소비재시장의 개방도가 낮을 경우 국내 시장에서 제품 다양성 부족 및 국내외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해외직구를 유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IT기술의 발전으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FTA확산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의 인하 또는 철폐 및 해외 인터넷 쇼핑몰들의 직접 배송서비스 등이 이루어지면서 해외직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3) 김철호(2014). 해외직구 관련 문제와 개선방안. 무역통상학회지
4) 강중구·이혜림(2014). 해외직구 규모 아직 작지만 소비시장 장벽 허물어지고 있다. LGERI 리포트

dCollection

4. 해외직구의 유형

일반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3가지 형태의 해외직구 유형을 살펴본다.

1) 해외직접배송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쇼핑몰 사이트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한국 주소로 직접 배송받는 형태이므로 수입통관의 과정을 제외하면 국내온라인쇼핑몰 구매와 큰 차이가 없다.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대체로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만 해외쇼핑몰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시키기 어려워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업체나 제품에 따라 배송비가 많이 부과되어 오히려 배송대행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일부 쇼핑몰의 경우 저렴한 배송비로 직접배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금액이상 구매 시 한국까지 무료배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2) 해외배송대행

해외직구 시 국내로 직접 배송받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 배대지를 거쳐서 다시 국내의 주소로 배송받는 형태로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하지만 업체가 배송을 대행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로 직배송이 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송대행지역의 세금 및 배송대행업체별 수수료 책정 기준에 따라 비용차이가 있어 비교가 필요하다.

직접배송과 주문과정은 동일하지만 국내로의 직접배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배송대행업체의 현지 물류창고를 거쳐서 국내로 배송을 한다. 그래서 배송대행업체들의 물류창고는 대부분 소비세가 낮거나 아예 없는 곳에 위

Collection

치에 있다.

3) 해외구매대행

해외직구의 주문절차나 언어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해외제품을 구매하고 배송 받는 형태로서,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만 하면 구매대행업체가 해당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제품의 구입부터 결제, 배송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익숙하지 않은 해외온라인 거래 및 언어 등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품·취소가 어렵고 이에 대한 조건도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업체에 내야하므로 해외직구가 저렴해서 하는 소비자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한 방법이다.

구매대행은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게 제품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고, 제품금액과 업체에서 책정한 대행 수수료 및 배송료를 결제하면 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5.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현황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온라인 쇼핑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5]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4년 6월 까지 5년간 전자상거래 수입신고(해외직구) 내역에 대한 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품목

5) 관세청(2015).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수입(해외직구) 동향. 관세청 보도자료

Collection

별 수입건수·금액 측면에서 소비자의 최대 관심품목은 커피, 핸드백, 운동화로 나타났다.

[표 II-2] 전자상거래물품 반입동향 통계표

(단위 : 천 건, 천불)

년도	목록통관		EDI 수입신고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0	1,075	56,416	2,504	217,815	3,579	274,231
2011	1,818	105,073	3,784	367,204	5,602	472,277
2012	2,845	213,324	5,099	493,882	7,944	707,206
2013	3,807	330,716	7,352	709,322	11,159	1,040,038
2014	6,588	569,725	8,942	975,190	15,530	1,544,915

자료 : 관세청, 2015. 3.

e-나라 지표[6]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0년 3,579천 건, 274,231천불 규모에서 2014년에는 5년 만에 15,530천 건, 1,544,915천불 규모로 급증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유로 환율까지 급락하면서 해외직구는 유럽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14년 거주자의 해외카드이용실적이 전년대비 15.7% 증가한 122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원/달러환율 하락(-3.8%) 및 출국자수 증가(8.3%), 해외직구 확대(48,5%)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하였다. [7]

6) 정부기관에서 엄선한 지표를 통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의 우리나라 현위치를 보여주는 서비스

7) 여신금융협회(2015). 2014년 해외카드 이용실적 분석. 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

Collection

[표 II-3]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2014년)

(단위: 천 건, %)

	구분	미국	중국	독일	홍콩	일본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기타	합계
'14	건수	11,412	1,697	839	568	365	219	124	109	197	15,530
	비율	73.5	10.9	5.4	3.7	2.4	1.4	0.8	0.7	1.3	100
'13	건수	8,372	1,276	488	345	184	205	72	90	127	11,159
	비율	75.0	11.4	4.4	3.1	1.6	1.8	0.6	0.8	1.1	100
'12	건수	6,314	596	328	209	103	163	56	95	80	7,944
	비율	79.5	7.5	4.1	2.6	1.3	2.1	0.7	1.2	1.0	100

자료 : 관세청, 2015.

국가별로는 미국(73%)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었고, 중국(11%), 독일(5%), 홍콩(4%), 일본·영국(각 2%), 프랑스·뉴질랜드(각 1%) 등 8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표 II-4]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국가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가수	19개	25개	28개	32개	38개

* 연간 통관건수 100건 이상

자료 : 관세청, 2015.

2010년에 19개였던 거래국가 수는 2014년에 38개로 늘어나 거래국가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1회 당 구매금액은 50불 초과 100불 이하가 37%로 가장 많았고, 이하가 25%, 100불 초과 150불 이하가 27%, 150불 초과 200불 이하가 8%였다. 즉, 총 구매금액이 200불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97%로서, 국내 소비자들은 대부분 소액물품 위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표 II-5] 전자상거래물품 금액대별 통관현황(2014년)

(단위: 천 건, %)

구분	50불 이하	50불 초과 100불 이하	100불 초과 150불 이하	150불 초과 200불 이하	200불 초과 1,000불 이하	1,000불 초과	합계
건수	3,885	5,764	4,155	1,274	400	52	15,530
비중	25	37	27	8	3	0.3	100

* (1,000불 초과) 2010년: 6천 건 → 2014년: 52천건(767%↑)
* (목록통관) 물품가격(FOB) 기준, (수입신고) 과세가격(CIF: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기준으로 기준 상이에 따른 오차 있음.

자료 : 관세청, 2015.

1,000불 초과 고가물품의 경우 전체의 0.3% 정도로 비중은 적었으나, 총 5만 2천 건 규모로 5년 전에 비해 767% 증가하는 등 전체 해외직구 증가 수준(330%)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세금을 내더라도 가격차이 및 제품 다양성 등으로 인해 텔레비전, 휴대폰, 전열기기, 자전거, 운동기구, 의류, 신발, 시계 등 다양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2절 마약류 밀수입에 대한 선행연구

현재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을 다룬 연구가 미약하기 때문에 마약류 밀수입에 대한 선행연구와 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선행연구를 따로 파악하여 이를 합치시켜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마약류 밀수수법과 그 효율적 대응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마약류의 밀수입에 대한 기존연구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조직에 대한 연구와 마약류 사범처리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Collection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 밀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표 II-6] 마약류 밀수입에 대한 선행연구

분 류	내 용	연구자
마약조직에 관한 연구	마약조직의 생존형태 연구	조병인
	국제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마약범죄를 중심으로	최정건
마약류 사건 후속처리에 관한 연구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신의기 강은영 이민식
	마약류 밀수동향 분석과 공급차단을 위한 관세국경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장광현

자료 : 필자가 정리

1. 마약조직에 관한 연구

먼저 직접적으로 마약류를 다루는 조직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수법·체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병인[8]은 "마약조직의 생존형태 연구"를 통해서 국제마약조직들은 체포를 면할 수 있는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세계 각국의 강력한 규제를 극복하며 불법마약거래를 계속한다고 했다. 마약거래의 안전과 판매수익의 보호를 위한 마약조직의 행태들은 실로 다양하고, 기발하고, 은밀하고, 기민하고, 집요하고, 치밀하고, 대담하여 막강한 수사

8) 조병인(2003). 마약조직의 생존형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Collection

력을 갖춘 나라들도 마약조직을 제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직관리가 엄정하고, 뇌물공세로 보호막을 구축하고, 국제적 연계를 통해 수익의 확대 및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공권력에 맞서는 위세는 인류사회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협할 정도이다. 처벌수위를 높이면 마약류공급자들은 더 많은 수익에 현혹되어 온갖 술수(術數)를 동원해 마약판매를 늘리거나 혹은 국가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서술하였다.

최정건[9]은 “국제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마약범죄를 중심으로”를 통해 국제조직범죄의 개념과 마약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마약조직과 중남미 마약카르텔의 마약범죄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불법물품이 운반되는 것을 사법기관의 감시 하에 허용하여 불법물품을 수령하는 마약거래자나 마약범죄자를 알아내기 위한 통제배달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약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사관이 가상의 신원을 사용해서 수사하는 위장수사기법을 소개하였다.

2. 마약류 사건 후속처리에 관한 연구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일반 마약류 사건의 후속처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의기・강은영・이민식[10]은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연구를 통해 조

9) 최정건(2007). 국제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마약범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10) 신의기·강은영·이민식(2002).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연구총서, Vol.2002

dCollection

사와 판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폐해에 대한 사회 인식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범죄의 재발율이 높고,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사용범죄에서 공급범죄로 전이될 수 있고,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 및 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장광현[11]은 “마약류 밀수동향 분석과 공급차단을 위한 관세국경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능화·국제화·조직화 되고 있는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여, 마약류 단속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 단속인력 확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수사기법 강화, 최첨단의 장비 도입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절 해외직구 관련 특별통관제도[12]

1. 해외직구 관련 특별통관제도의 개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거래물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밀반입 및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관세 탈루 등 불법통관, 일부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소액물품 면세 또는 수입요건확인 면제제도의 악용, 음란물 부정식품, 모조상품 등의 불법반입 및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주체의 결정에 따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는 통관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

11) 장광현(2013). 마약류 밀수동향 분석과 공급차단을 위한 관세국경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12) 김철호(2014). 해외직구 관련 문제와 개선방안. 무역통상학회지

dCollection

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고시에 따라 엄격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하여 간이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제도 등의 특례를 적용·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소비재 시장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우려했던 통관관련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특별통관제도와 관련한 법률 규정으로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을 들 수 있다.

2. 해외직구 물품 특별통관 관련 규정

1) 특별통관 관련 주요 규정

해외직구 물품 등 특별통관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은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관세법 제94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한 간이신고(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규정으로는 관세법 제254조,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및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를 들

Collection

수 있다.

그리고 특별탁송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54조의2, 관세법 시행령 규칙 제79조의2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우편을 통한 우편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관셋법 제256조 내지 제261조, 관세법 시행령 제260조 내지 제263조 및 국제우편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통관절차 적용대상 물품은 전자상거래로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전자상거래업체가 아닌 법인과 개인이 수입하거나 법인의 구매요청을 받아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제3조).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신고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특송물품은 원칙적으로 전산으로 선별된 건만을 검사한다. 다만, 마약, 총기류 등의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X-ray판독 또는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제8조). 그리고 세관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X-ray판독,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구매자 또는 관련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주문내역서, 물품대금 지급처, 반입경위서 등을 제출받아 수입신고 내용이 적정한 지를 심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그리고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 신고 및 가격신고가 적정한지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심사부서에 기업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전자상거래업체의 의무사항으로는 관세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Collection

수입 또는 수입대행(제10조 제1항 1호) 및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함으로써 소액면세를 적용받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제10조 제1항 2호)를 할 수 없다. 거래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제10조 제2항),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의 통관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거래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전자상거래물품에 관한 특별통관 대상업체에 대하여 통관지 세관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제11조). 또한 세관장은 특별통관 대상업체의 과세가격, 사업유형 등 신고의 정확도, 정보제공의 성실도, 불법통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규 준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비율 차등적용, 통관편의 배제, 신고번호 부여 취소 등 통관절차를 차등적용할 수 있다(제12조).

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

특송물품의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급탁송물품(이하 '특송물품')이라 함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견품 등을 말하는데(제2조 2호), 특송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제3조)로서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이러한 특송업체들의 통관절차를 살펴보면, 특송물품은 세관지정 장치장 또는 승인받은 특송업체 자체시설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쳐 반

Collection

입되어 통관하여야 하는데, 수취물품의 사용목적과 액수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통관 및 일반수입통관물품으로 분류된다.

먼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일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간이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과 간이신고 배제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표 II-7] 목록통과 과세범위와 허용 품목

구 분	일반 특송화물	미국발 특송화물
면세가능 상품가격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100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200 이하
목록통관 허용 품목(공통)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자료 : 관세청 법령집 참고, 2015.

[표 II-8] 특송물품의 통관유형

(단위: 천 건, %)

구분	대상	수입신고인
목록통관	자가 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미화 10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	통관목록 제출자 : 특송업체
간이통관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화주 또는 관세사
일반통관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화주 또는 관세사

자료 : 관세청 법령집 참고, 2015.

Collection

4)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간이통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우편물의 통관절차를 살펴보면, 납세의무자는 특급우편물 목록(EMS Manifest) 및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표지, 세관신고서, 송장 등 우편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우체국에 우편물이 도착하면 통관우체국에서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세관에 제출한다. 서신을 제외한 모든 통관대상 우편물은 검사하여야 하는데(제6조 제1항), 검사는 X-ray 검사를 거쳐야 하며(제6조 제2항), 검사결과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6조 제4항).

X-ray 검사결과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액면세물품(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 물품 등) 등 현장면세 처리하며(제8조 제1항), 현장과세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통관절차(제9조)를, 그 이외 심사대상물품은 간이통관(제13조) 또는 일반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4조). 현장과세대상 물품은 수입금지 또는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도착주소가 사서함이 아닌 우편물 등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명확하고, 세액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으로 미화 1,0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한다(제9조 제1항).

제4절 마약류 밀수입

1. 마약류의 정의와 그 범위

마약이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

dCollection

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약물(illicit drug)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편, 대마, 코카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등과 같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물질로서 중독성이나 탐닉성을 가지고 있어 신체와 정신을 파괴시키는 약물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마약류라 함은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 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증상 등이 나타나며,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및 대마(大痲)를 말한다. 그 중 "마약"이란 진통, 마취 작용과 함께 습관성과 탐닉성을 지닌 물질로써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 증세를 일으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물질로써 법률적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양귀비[13], 아편[14], 코카 잎[15], 그리고 여기서 추출되는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등 총 35종의 알칼로이드 및 이들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아세틸메타돌 등 화학적 합성품 81종, 그리고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재를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만일 오용, 남용할 경우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즉 오용 및 남용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질 수 있는 물질이다.

---

13)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14)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15) 코카 관목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Collection

약리작용에 따라 환각제,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 억제제(진정제)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환각제의 경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이 보이고, 또는 냄새를 느끼는 등 병적 현상을 야기시키는 작용물질이다. 법률적으로「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 4가지 목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크라톰 등 43종)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암페타민 등 44종)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DNFU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알로바르비탈 등 62종)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프로포폴 등 69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재.

“대마”란 열대, 온대 지방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줄기의 섬유는 삼베, 돛, 로프, 그물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한방에서는 약재로 사용되며 씨를 이용해서 기름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대마의 잎, 꽃을 말린 것을 대마초라고 하며, 대마초가 환각 목적의 흡연 물

Collection

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1960년대이다. 대마초는 당시 미군들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1970년대 중반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나가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표적 환각제로 알려져 있다. 법률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바로는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밀수입 및 사이버밀수입 정의

밀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은 정당하게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관신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몰래 물건을 사들여 오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 해석으로는 관세를 회피하거나 금지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비밀리에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나 사실상 밀수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밀수는 지능적이고 경제적이며 조직적이고 상습성과 기동성, 국제성을 지닌다. 이런 특성을 지닌 밀수행위는 바로 국가와 사회 및 개인에게 해독을 주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 관세를 탈세하여 국가 재정수입에 지장을 주고 국내산업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며 국제수지 악화와 무역질서를 문란케 한다.

사이버밀수란 사이버 상에서 불법 전자적 무체물을 수출입하거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출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의 사이버 불법거래도 포함한다.

① 진정 사이버밀수

Collection

사이버 상에서 음란물 등 불법 전자적 무체물을 수출입하는 행위

② 부진정 사이버밀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출입하는 행위

③ 사이버 불법거래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사이버 상에서 세관업무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거래하는 행위

제5절 국내 마약밀수입 형태 변천사[16)17)]

1. 해방이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밀반입되어 사용되었던 마약류는 아편이었다. 중국의 아편전쟁(1839~1842) 다음 해에 중국을 다녀온 우리나라 사신들이 보고서인 "견문별단(見聞別單)"에 이미 아편흡입의 해독을 논하고 아편이 조선 전역에 만연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발견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아편재배가 처음 시작되었던 때는 구한말로 추정된다. 원산만 개항 당시 최초로 입항한 것이 중국의 증기선이었고, 중국인 "양대(楊大)"이란 자가 아편을 흡입하면서 그 자랑스러움을 한국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때부터 아편을 "당엽(唐燁)"이라 하였고 그 얼마 후 이를 재

16) 임대환(2000). 마약밀수단속의 효율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17)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참고

dCollection

배하여 "앵속"을 양귀비라 명명하였다.

구한말 시대와 한일합방 당시의 아편중독자들의 수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 때도 아편중독이 일부지방이나 일부계층에서 문제가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아편을 단속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아편단속 업무를 비교적 중요한 위생행정 하나로 여기고 아편을 단속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아편에 의해 문제된 마약류로는 몰핀이나 헤로인을 들 수 있다. 몰핀은 1890년대 말 주로 호남지방에 처음으로 밀반입되었다. 그 후 의사나 선교사들에 의해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일부 의사나 약사들의 무책임한 처방으로 1900년대 초부터 1920년대에 걸쳐 전국적으로 일시에 다수의 몰핀중독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헤로인 역시 몰핀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북지방으로 밀반입되어 몰핀과 같은 경로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2. 1945~1950년 말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중국의 남만주와 화북등지에서 귀환한 동포 중에는 아편중독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회가 불안정하고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마약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 하에서 마약중독자는 걸잡을 수 없이 증가하였다. 해방직후 전매청 창고에서 수십톤의 생아편과 헤로인, 그리고 다량의 몰핀이 분실되어 비밀리에 유통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산간벽지에서 아편을 밀경작하여 생아편을 구워 증류수나 음료수에 용해시켜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주로 밀경작하는 지역은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또는 전라도 등이고 일부 촌락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생아편 중독이라는 말

Collection

을 듣기도 하였다.

1946년에 마약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군정청에서는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보건후생부(현 보건복지부 전신)약무국이 마약단속 업무를 담당하여 단속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 통제정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947년 보건후생부에서 조사한 마약류 환자의 집계에 따르면 확인된 중독자만도 서울시와 인천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중독자수는 3,983명에 이르렀다. 서울과 인천에 거주했던 중독자 수를 가산한다면 당시 국내 마약 중독자의 총수는 1만 명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이었다. 전쟁으로 생기는 군대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진통제가 마약으로 남용되고 그로 인한 중독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남북분단과 전쟁, 전쟁이후의 혼란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마약중독자들도 계속 증가하였다. 보건사회부 통계에 의하면 1954년에는 5만 명에까지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1950년대에도 미군정 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에 의거, 마약류 사범의 통제와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마약류 남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국가적 시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이 기간 중 주목할 두 가지의 조치가 있었다. 즉, 1952년에 당시 보건부(현재 보건복지부 전신)산하에 마약과를 신설하여 마약 감시원제도를 신설한 점과 1957년에 비로소 마약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남용된 약물을 살펴보면 아편제로는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이었고 드물게는 코카인도 사용되었다. 중국이나 38선 이북 등지에서 코카인, 생아편 등의 마약이 밀수입되어 유통되었다. 이는 남한의 지리적 여건이 38선과 접하고 있었고, 또 삼면이 바다이므로 마약을 밀수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수 고위당국자, 또는 이들의 부인,

Collection

이들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이익을 올리는 아편장사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서울시내 곳곳에 '아편굴' 이 형성되어 있어서 밀수되거나 밀경작된 아편이 유통되고 있었다.

3. 1960년대

1960년대 초 해방과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1957년의 마약법 제정과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법적 제재로 마약중독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우리나라 군대가 월남에 파병되면서 군인과 군속에 의하여 마약이 대량으로 밀반입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1965년에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중독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메사돈 파동이 일어났다.

1965년 이전까지는 국내마약 환자를 약 1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메사돈 파동으로 인하여 마약환자는 34,000명 정도로 격증하였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메사돈 파동이 일어난 이듬해인 1966년에는 마약 중독자가 36,000여명까지 증가하였다. 그 이후 메사돈 사건이 수습되고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으로 마약밀매 밀수를 통제함으로써 마약중독자 수는 점차 감소하여 1968년에는 20,000여명으로, 1969년에는 8,0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 시대에 남용된 약물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 초반부터 1966년경 까지는, 헤로인, 메사돈, 모르핀, 코데인 등 마약들이 흔히 사용됨과 동시에 바르비튜레이트(Barbiturate)를 위주로 한 비마약성 습관성 약물을 마약과 혼합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여기서 혼합사용이란 원래 마약구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적은 양으로 마약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비마약성 습관성 약물을 마약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Collection

4. 1970년대

1960년 중반부터 시작된 월남전은 1975년 종전 때까지 우리사회에 마약류 문제를 일으킨 외적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파월군인과 군속들에 의하여 월남산 생아편이나 코카인, 헤로인 등의 마약이 밀수입 되어 들어왔다. 또한, 1960년대 말부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촌을 중심으로 마리화나 흡연자들이 생겨났으며 미 군사우편으로 우표형 LSD등이 밀수입되었다. 그런데 이 마리화나 흡연은 당시 사회에 불만이 많은 젊은 층에게 일종의 반항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대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마리화나 흡연자들은 남자들의 경우 20세 전후의 학생, 재수생, 건달, 그리고 악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여자들의 경우는 미군상대의 접대부들이 많았다.

한편 1970년대부터는 외항선과 활어선을 통해 밀수를 해오던 밀수범들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루게 되면서 마약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이미 1950년대부터 일본에서 메스암페타민의 남용이 사회문제화 되자 일본정부는 암페타민의 제조와 판매를 강력하게 단속하였다. 한국의 제조기술자에게 원료를 대주고 한국에서 제조하여 밀수선을 이용,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방식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였다. 1970년까지 한국에는 메스암페타민 규제법이 없어서 밀조밀매를 처벌 할 수가 없었다. 밀수를 할 경우 관세법으로 다스렸다. 1960-1970년대에 한국사회에서 메스암페타민의 밀수는 마약류 통제정책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도리어 밀수단속 차원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 인천과 대만항로를 왕래하는 한 상선의 소속선박이 정기적으로 원당을 운송하고 있었다. 소속선박의 주방장은 주방창고에 설탕과

Collection

조미료 함지박사이에 염산에페드린 함지박을 끼워 보관하는 수법으로 상당기간 메스암페타민의 원료물질인 염산에페드린을 계속 밀수입하였다. 당시 중국 및 대만에도 이러한 물질을 단속하는 법규가 없었고 1990년 중반에야 이러한 물질을 통제하는 법규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 세관직원들은 메스암페타민이나 염산에페드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어서 그러한 물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1970년에 한국에서도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을 제정하여 메스암페타민 사범을 단속하였는데 그 단속대상은 주로 밀조범들이 대부분이었다. 1977년에는 제2의 대마초라고 불리는 '신경안정제'가 남용되기 시작하였다. 대마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대마초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일부 젊은이들이 구입하기 쉽고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의약품을 사용 하였다. 수면, 최면작용을 하는 항히스타민제나 진통진정제, 신경안정제 등을 다량으로 복용하면 대마초와 흡연상태와 비슷한 환각효과를 느끼게 되므로 이를 대마초 대신 남용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이밖에도 미군기지촌 주변에서는 헤로인, LSD, 메스칼린 등의 환각제가 남용되었다. 메스칼린이나 LSD는 SOFA 대상자들에 의하여 밀수입 되어서 전파되었다.

5. 1980년대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남용약물은 역시 메스암페타민이다. 1970년대 이후로 한·일 양국의 메스암페타민 밀제조, 밀수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한편으로는 일본으로의 밀수출로 이익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 밀조된 암페타민의 상당량이 국내에서 유통되기 시작하게 되었다. 남용계층도 종래 폭력배, 유흥업소 종사자 중심에서 학생, 가정주

Collection

부, 농어민에 이르기까지 사회각층에 폭넓게 확산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메스암페타민 남용은 1988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89년부터 검찰이 대규모 공급조직을 적발하고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메스암페타민남용이 줄어들면서 한편으로는 그 동안 사용이 뜸하던 대마와 아편사용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동안 단속이 비교적 느슨했던 대마와 아편이 메스암페타민의 공급감소에 따른 대체약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이 시대 약물남용의 새로운 현상은 "제3의 마약"이라고 불려지는 위험한 본드와 신나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 남용되어 환각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하거나 질식사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6.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 마약류 남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우선 메스암페타민 밀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국내에서 밀조가 크게 줄어 이의 가격이 상승해 외국에서 밀수입되기 시작했고 그 동안 국내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았던 코카인과 헤로인의 밀수입 사실이 드러났고, 1990년 초 노충량 사건과 박연차 사건 관련 피의자등이 코카인과 LSD를 남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 밖의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는 중국과 국교 정상이후 중국교포들에 의한 아편 밀수이다. 중국 교포들이 막대한 이윤을 노려 계속되어 왔으나 그러나 1991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였고 1996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1997년부터 중국교포들과 여행자 등이 살 빼는 약으로 알고 향정의 약품 펜프라민, 암페프라몬 등을 밀반입 하였다. 1999년에는 교포 및 여행

Collection

자들이 태국에서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향정의약품 펜터민, 디아제팜, 노루슈도 에페드린 등을 밀수입하여 유통시켰고, 후반기에는 조직적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량 밀수입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또한, 동남아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야바(메스암페타민에 카페인 첨가)가 밀수입되기도 했고, 아프리카에서 생산되어 그 곳에 남용되는 환각성 식물인 Khat가 최초로 밀수입 되었다.

1994년에는 코카차와 Duragesic(아편성분이 함유된 파스형태)이 밀수입되기도 하였다. 1999년도에는 미군부대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GHB(Gamma Hydroxy Butgrate, 물뽕)가 광주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코카인 제조시 필요한 precursor chemlcal인 망간산 칼륨이 콜롬비아 밀수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계속해서 헤로인이 북미지역으로, 코카인이 일본 등지로 밀수입되면서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 1996년에 이어 1997년 메스암페타민 밀조사범에 의한 범죄 2건이 적발되어 국내에서 계속해서 밀조가 시도되고 있음이 알려졌고, 이의 원료인 대량 염산에페드린 밀반입 시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외에도 파키스탄, 이란,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국적의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하여 헤로인, 해시시, 생아편 등을 밀수입하는 등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UN 협약에 규정한 통제 배달(controlled delivery)을 수행하여 크게 성공하기도 하였다.

7. 2000년~ 현재

1988년도에 마약류 사범수가 3,939명까지 급증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

Collection

를 야기한 뒤 1989년 이후 일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1995년부터 연평균 18.5% 증가세로 전환하여 1999년도에는 최초로 1만명 대를 돌파하였고, 2000년에는 10,304명에 이르렀다. 메스암페타민이 계속해서 주로 중국에서 밀수입 되었고 밀반입량은 46.5kg으로 전년대비 218.5% 증가하였고 대마초 밀반입량은 44.4kg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여kg씩 2차 걸쳐 밀반입하여 일본세관과의 사례분석에 의하면 마리화나는 일본이 최종목적이며 나이지리아 신디게이트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에도 계속해서 중국에서 메스암페타민이 밀반입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수입화물 속에 메스암페타민의 30kg을 은닉 밀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또 하나의 특이사항은 마약밀수조직들이 운반자를 그간 내국인을 이용했으나 2001년 들어 5월 초까지 외국인 3명(방글라데시인 1명, 태국인 2명)을 이용하여 외국인을 단순 운반자로 이용하는 새로운 추세가 나타났다.

급격한 개방화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자 2000년대부터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필로폰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야바, 엑스터시 등 신종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어 외국유학생, 외국인, 대학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 밀수출의 중간 경유지로 한국을 이용하는 국제마약조직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한국을 경유하는 마약류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Collection

[표 II-9] 국내마약류의 역사

시대	주요 남용 약물	사회문제	관련법
일제점령기 이전	아편	아편 중독자 발생	
일제점령기	헤로인, 아편, 몰핀	마약 중독자 증가	조선아편취체령
1945년	헤로인, 아편	마약 중독자 증가	마약취체령
1950년대	아편	아편 중독자 증가	마약법
1960년대	아편, 메사돈	메사돈 중독자 발생 및 증가(메사돈 파동)	마약법
1970년대	대마초, 필로폰, LSD	젊은 층과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밀조범 증가	습관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1980년대	필로폰, 대마초, 본드	필로폰 중독자 증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1990년대	필로폰, 대마초, 부탄가스, 본드	신종 마약류 출현 및 부탄 가스, 본드 중독자 증가 (필로폰 제조 근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0년-현재	필로폰, 야바, 엑스터시	신종 마약류 중독자 증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률통합)

자료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Collection

제 3 장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 사례

제1절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인터넷의 발전은 전 세계 누구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정보의 공유와 확대가 손쉽고 간편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직구와 같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음성적인 불법행위를 공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해외직구가 유행처럼 번지며 이를 악용하여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이 직접 마약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주로 중국과 홍콩에서 마약류를 들여왔다면 이제는 멕시코 등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의 구입이 가능해 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를 비롯한 몇 가지 마약류가 합법이기 때문에 처방전이 없이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해 우리나라로 배송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 수법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의 밀수 수법은 특별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간단하다. 단순히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한 후 특송 등을 통하여 정상품 또는 소액면세(15만원 이하)를 가장하여 밀수한 후 물품을 운송회사로부터 받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불법 반입된 마약류를 국내에서 다시 쇼핑몰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통하기도 한다. 또 주부나 회사원 같은 일반인도 인터넷

Collection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마약에 대한 주문을 하고, 서류 등에 숨기는 방식으로 목록통관을 통해 P2P 형태의 소량 마약을 손쉽게 접하기도 하고, 유학생, 외국인 영어강사 등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여 '러쉬'[18] 등 신종 마약류를 직접 구매하여 국제우편·특송화물로 밀반입하기도 한다.

2.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 규모

관세청의 자료[19]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총 308건, 71.7kg, 시가 1,500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되었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해 각각 건수 21%, 중량 54%, 금액 62%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적발된 마약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50.8kg (55건)으로 가장 많고,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17.3kg(167건), 대마가 2.7kg(66건) 순이다.

특히 국내 최대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작년 한 해 적발된 50.8kg('13년 30.2kg)은 2004년 이후 최대 적발량으로 국민 16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18) 혈관 치료제로 만들어졌지만 복용시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어 최음제로 사용되는 신종 마약, 다른 혈관 확장제와 병용 시 의식 상실, 심장 발작, 저혈압, 심부정맥 및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약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2월 식약청이 임시향정시성의약품으로 지정.

19) 관세청(2015). 2014년 마약류 밀수 동향. 관세청 보도자료

dCollection

[그림 Ⅲ-1]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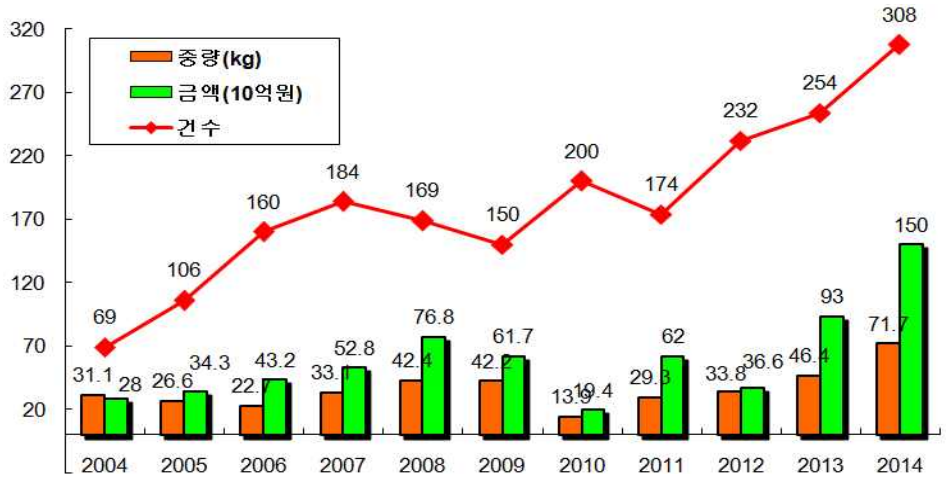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2015.

2014년 마약류 단속실적의 특징은 국제우편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일반인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소비목적으로 신종마약을 구입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 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Ⅲ-1]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건 수	국제우편 : 금액 신종마약 : 적발량	건 수	우편우편 : 금액 신종마약 : 적발량
국제우편 적발	139건	11억 원	228건	33억 원
신종마약 적발	104건	6.9kg	167건	17.3kg

자료 : 관세청, 2015.

dCollection

또한, 10대 청소년 마약류 밀수사범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최근 청소년들이 해외 인터넷 마약판매 사이트에서 합법가장 광고에 현혹되거나 호기심에 신종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소년 마약류 밀수 사범은 2011년 0명에서 2012년 1명, 2013년 1명, 2014년에는 1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인천공항세관과의 공조수사 결과[20], 해외 인터넷 마약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대마뿐만 아니라 신종마약의 거래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심지어 고등학생이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대마를 밀수입하는 등 마약에 노출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외 인터넷 마약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마약을 직접 구매하여 밀수한 사범은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3% 급증하였고, 압수된 밀수 신종마약 양도 전년 동기 대비 217배 급증하였다고 한다. 밀수사범의 연령대를 보면 17세 고등학생 1명, 20대 5명으로 10~20대가 절반가까이 차지하여 마약사범 연령대가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2] 마약사범별 단속 현황

단속기간 : 2014.1.1~6.20

순번	유형	인지	압 수 물
1	밀수입사범	13명	애더럴정 75정, 신종마약 279.22그램, 대마 63.23그램
2	공급사범	6명	
3	투약사범	6명	
합계		총 25명	구속 9명, 불구속 4명, 기소유예 7명 등

자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4.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14). 해외직구 마약 밀수사범 등 집중 단속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dCollection

[표 III-3] 마약류별 단속 현황

단속기간 : 2014.1.1~6.20

신종마약		향정		대마		합계(명)	
단속	구속	단속	구속	단속	구속	단속	구속
8	1	8	5	9	3	25	9

자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4.6.

제2절. 국제우편 통한 밀수입 단속 사례

1. 애더럴정 밀수입한 한국계 미국인 구속 사례[21]

2014년 한국계 미국인인 ㄱOO(26세)은 국내 외국인학교를 마치고 미국 유학 중 대마 등을 상습 투약하던 자로서 애더럴정(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성분) 75정을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고 2013년 10월 경부터 2014년 4월 경까지 5회 투약한 사건이다.

애더럴정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임에도 미국에서 한인학생, 한국유학생 등에게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암페타민 성분함유로 인하여 각성효과가 커 학생들의 집중력 강화에 오남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코카인을 비롯한 마약과 동일하게 중독의 위험성이 크다.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14). 해외직구 마약 밀수사범 등 집중 단속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dCollection

[그림 Ⅲ-2] 국제우편물 속 티셔츠에 숨겨져 있던 애더럴정 75정

자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4.6.

dCollection

2.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 슈도에페드린 함유 캡슐 밀수입사건[22)]

중국인 피의자 리ㅇㅇ는 2012년 8월 경부터 9월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중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국제소포우편물 형태로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캡슐 9,943정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다가 적발되었다.

3. 개인정보 도용, 해외직구 배송대행 악용 '묶음배송' 방식 위조 상품 밀수조직 적발[23)]

피고인 Aㅇㅇ(항공특송업체 대표), Bㅇㅇ(관세사 사무장), Cㅇㅇ(중국측 물류업자) 등 6명이 순차 공모하여,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 까지 33,193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위조상표 핸드백 등 41,293건(위조상품 시가 13억원)을 관세법상 15만원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받고 간이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 특례를 악용하여,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다가 적발되었다.

4. 디지털 결제수단인 '비트코인' 이용 대마 수입 고등학생 적발 사례[24)]

2014년 4월 ㅅㅇㅇ(17세)은 해외 인터넷 마약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대마를 판매한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대마 25.07그램(50회 흡연 분량)을 국제우편을 통하여 밀수입하다가 검찰청과 관세청

22) 대검찰청(2013). 2012년도 마약류사범 단속결과. 대검찰청 보도자료
23) 부산지방검찰청(2014). 개인정보 도용, 해외직구 배송대행 악용 '묶음배송' 방식 위조상품 밀수조직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4)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14). 해외직구 마약 밀수사범 등 집중 단속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Collection

의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사건이다.

[그림 III-3] 국제우편물에 숨겨져 수입된 대마 약 17.6g

자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4.6.

Collection

4. 인터넷 이용 신종마약(일명 러쉬) 밀수입사범 2명 구속기소[25]

ㄱㅇㅇ은 2014년 5월 경 인터넷 마약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슬로베니아에서 국제통상우편으로 임시향정신성 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26](일명 러쉬) 45ml를 국내로 밀수입하다가 적발되었다.

ㄴㅇㅇ은 2014년 7월 경 인터넷 마약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홍콩에서 국제등기우편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30ml를 국내로 밀수입 하다가 적발되었다.

[그림 III-4] 압수 마약류 사진

신종마약 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의 포장된 모습	포장지를 벗겨낸 후의 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의 모습(황갈색의 휘발성 액체)

자료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보도자료, 2014.6.

25) 수원지방검찰청(2014). 인터넷 이용 마약 밀수 사범 등 집중 단속. 수원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6)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화학명칭, Isobutyl nitrite, 물질명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는 2013. 12. 10.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신종마약으로 주로 액체가 기화되는 것을 코로 흡입하며 의식상실, 심장발작, 시력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

dCollection

5. 인터넷 이용 신종마약(합성대마, 일명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밀수입 사범 1명 구속 기소[27]

ㄷㅇㅇ은 2014년 4월 경 인터넷 마약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영국에서 국제등기우편으로 합성대마(5F-PB-22, 일명 파인애플 익스프레스)[28] 6.42g을 국내로 밀수입 하다가 적발되었다.

[그림 III-5] 압수 마약류 사진

신종마약 합성대마 5F-PB-22(일명 파인애플 익스프레스)의 포장된 모습	포장지를 벗겨낸 후의 5F-PB-22의 모습

자료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보도자료, 2014.6.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2014). 인터넷 이용 마약 밀수 사범 등 집중 단속. 수원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8) 5F-PB-22(일명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는 2013.8.5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합성대마의 일종인 신종마약으로, 대마의 주성분인 THC와 구조가 유사하거나 또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물질(synthetic compound)임

dCollection

6.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책자 속 히로뽕 23g 적발[29)]

[그림 III-6] 압수 마약류 사진

중국판 영어회화 책자

제본 부위에 홈을 파고 은닉

적발된 히로뽕

자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참고

제3절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마약류 밀수입 단속시스템

1. 관세청 단속시스템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은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세청 산하의 부산국제우편세관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이들 물품에 대해 X-RAY 검색기를 통해 단속하고 있다.

이들 국제우편세관에서는 외국에서 반입된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를 통해 통관대상과 면세

2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참고.

dCollection

대상으로 구분되고,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통관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림 Ⅲ-7] 국제우편물 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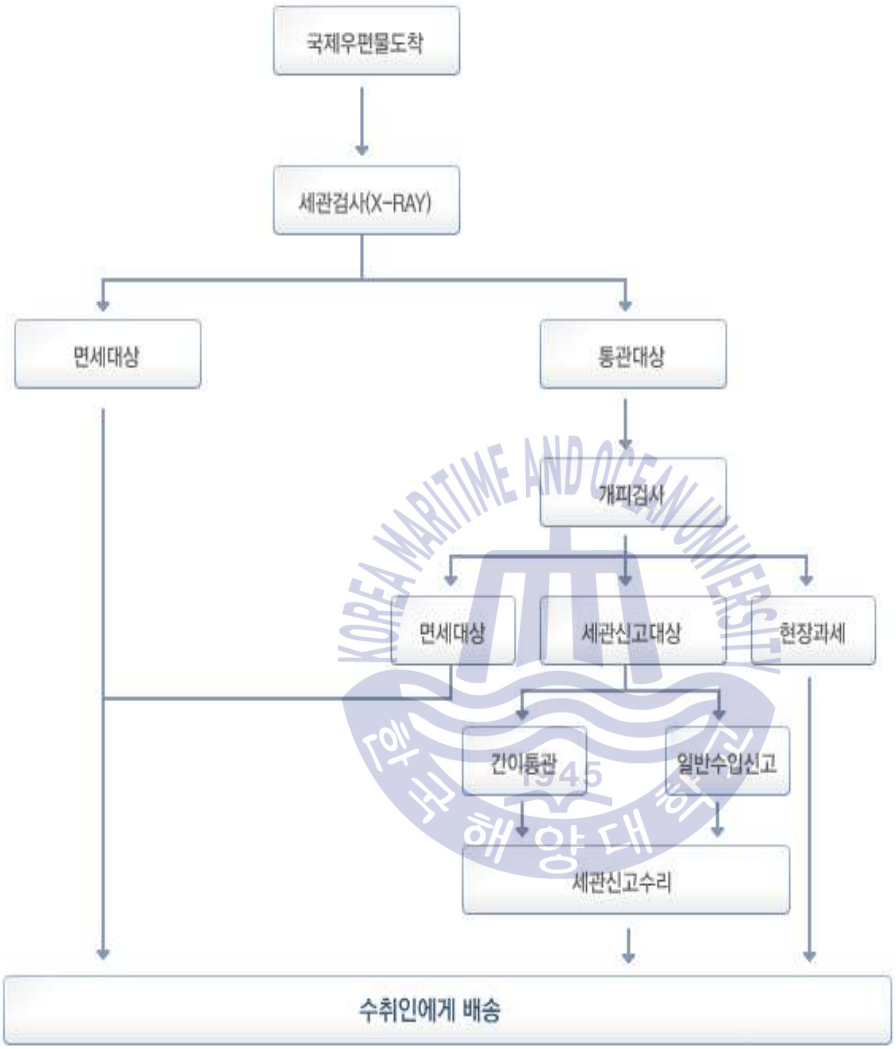

자료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

dCollection

[그림 Ⅲ-8] 부산국제우편세관 조직도

자료 : 부산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

부산국제우편세관의 경우 통관과 검사의 2개 부서가 존재하며 통관부서는 다시 간이통관팀, 수입통관팀, 기관운영팀으로 나뉘고, 검사부서는 X-RAY검사팀, 소포선별팀, 정밀검사팀, 조사팀으로 나뉜다.

[그림 Ⅲ-9]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조직도

자료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

Collection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경우 우편검사과와 우편통관과의 2개 부서가 존재하며, 우편검사과는 다시 기관운영, X-RAY・정밀검사, 조사・미군사 우편물검사팀이 있는 3개의 계로 나뉘고, 우편통관과는 수출입통관, 간이통관・검사를 맡은 3개의 계로 나뉜다.

2.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차단 노력

- 특송업체 관리

앞서 말해듯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물품은 주로 신속통관을 요구하는 특송화물로 분류하여 통관되고 있으며, 특송화물은 세관장에게 등록한 특송업체가 수출입하는 물품이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특송화물을 수출입하는 특송업체를 현장확인 및 서면확인을 통하여 법규준수도를 평가하고, 검사비율 및 목록통관허용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목록통관특송물품검사대상선별시스템(목록통관C/S[30]시스템)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하여 검사대상의 선별 및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처리결과를 등록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30) C/S란 Cargo Selectivity의 약자로서 수출입되는 물품 중에서 전산에 미리 등록된 기준에 따라 우범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는 물품을 골라 집중적으로 검사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검사관리기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C/S는 제한된 검사인원으로 수출입통관 물량 증가에 대처하여 우범성있는 필요. 최소한의 물품만을 중점검사하여 전체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비율은 낮추고 적발비율을 높여서 화물의 신속한 유통으로 물류비용을 경감시키며 위법.부당한 물품의 통관기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C/S란 개념이 넓은 의미로 확대운용되어, 수출입신고된 물품 중 검사를 하기 위한 물품의 선별이나 검사착안사항의 시달뿐만 아니라 수출입통관 관련법령상의 규제 및 각종 지시사항 등을 전산에 등록하여 접수화면을 통해 세관검사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Collection

전산C/S시스템에 의해 선별되거나 세관공무원이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수입담당부서에 일반수입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간이신고특송물품검사대상선별시스템(간이신고C/S시스템)

수입신고된 간이신고특송물품에 대하여 검사대상의 선별 및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처리결과를 등록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첨부서류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 한다. 다만, 간이신고C/S시스템과 수작업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적하목록(B/L 또는 AWB)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통제배달(C/D : Controlled Delivery)

통제배달은 마약이 적발된 중간지점에서 운반책을 체포하거나 증거물을 압수하는 대신 마약이 최종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감시함으로써 배후자, 조직, 자금원 등 마약유통의 전모를 밝히는 수사기법이다. 1998년에 제정된 UN협약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유일하게 함정수사를 인정하는 제도로 일반사항은 협약에 근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회원국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운영(국번없이 125)

마약류는 탐지를 위해 X-RAY,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밀수품목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제보에 의한 색출이 힘을 발할 수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밀수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제보에 의해 밀수품이나 밀수출입자를 적발

Collection

하게 하거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

우범성이 높은 여행자, 화물 및 운송수단을 판별할 수 있도록 범죄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파악하는 기법이다. 우편물·특급탁송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방법, 품명, 수취인 등에 대한 분석정보를 개발하여 적발율을 높이는 기법이다.

3. 마약사범 처벌규정[31]

관련법조	항	호	내용	의무조항	벌칙
제58조 벌칙	①	1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대표품목 : 헤로인, 코카인 등)	3-2 3-3 4-① 5의2-④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그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4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을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 JHW-18, 메스케치논 등)	3-5	
		4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 하거나	3-6	

31) 관세법 참조

Collection

관련법조	항	호	내용	의무조항	벌칙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수출입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 대마)	3-7	
		6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 메스암페타민 등)	4-①	
		7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4-① 5의2-④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처벌
	④	제1항(제7호 제외) 및 제2항을 예비·음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제59조 벌칙	①	1	수출입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2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 리저직산, 플루니트라제팜 등)	4-①	

Collection

관련법조	항	호	내용	의무조항	벌칙
		11	대마나 임시대마를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4-① 5의2-④	
		13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8-① 21-①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제5호 제외) 및 제2항의 미수범			-처벌
제60조 벌칙	①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 디아제팜, 졸피뎀 등)	4-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해당 죄에서 정하는 형의 1/2까지 가중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제4절 해외직구 마약류 밀수입 범죄의 개선과제

해외직구 물품의 특별통관과 관련하여 먼저, 해외직구 물품의 특별통관과 관련한 관련법률 규정의 통일화가 요구된다. 즉, 관세법과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국제우편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하위 통관특례 규정에서 소액물품의 범위와 간이통관 적용기준, 운송방법에 따른 간이통관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1945 한국해양대학교
dCollection

의 범위 그리고 물품검사관련 규정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2011년 2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검사대상물품의 검사권한을 세관으로 일원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송업체와 세관과의 MOU체결을 통하여 특송업체에게 통관절차와 관련한 자율적인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에게 부여된 관리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는 물품을 자체창고에 반입하여, 세관원이 아닌 자가판독 직원이 자사 특송물품에 대해 X-ray판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자가판독 직원의 경우 16시간 이상의 X-ray 판독교육이수 의무만 부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X-ray 판독교육 이수의무 이외에도 이들의 판독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불법 마약류 쇼핑몰에서의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자가 조직폭력배와 같이 과거의 전형적인 마약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주부나 회사원 10대의 청소년까지 범죄자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대상물품의 확대에 따른 불법통관은 증가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Collection

제 4 장 해외직구 마약류 밀수입 대응방안

제1절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단속기능 강화

1. 해외직구 물품 특별통관과 관련한 관련법률 규정 통일화

현재 소액물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세법에서는 소액물품의 범위를 1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송물품 통관 시 목록통관의 적용기준은 미화 100달러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간이통관범위와 관련하여 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우편물의 간이통관 범위를 15만원 초과 US $1,000이하(고시 제9조 제1항 3호)FH 규정하고 있으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특송물품의 간이통관구간은 미화 100달러 초과(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미화 2,000달러 이하(고시 제8조 제1항 2호)로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체국과 특송업체 중 어느 수단을 통해 수입되는지에 따라 간이통관기준이 상이하므로 운송방법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다.[32]

X-ray 검사와 관련하여 관련 고시들 간에 서로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즉, 특송물품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특송물품을 지정 세관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X-ray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제7조 제1항),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는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신고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특송물품은 원칙적으로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시 제8조). 따라서 동일한 사안임

32) 정재호 외(2012).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물품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Collection

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규정이 서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 수입물품 통관에 대한 규정이 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등으로 각각 제정되어 운영되면서 세부사항이 상충 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우편세관 마약류 검색 인원확충 및 마약 업무 조직개편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우편세관의 X-RAY를 통한 밀수입 관련 선별직원의 인원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의 물량에 비해 빈약한 수준이다. 부산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X-RAY 판독업무 검사직원은 1명으로 파악될 정도로 인력의 부족현상이 뚜렷이 드러난다.

마약류의 밀수입이 인터넷을 통한 간편 구매가 가능해 짐에 따라 그 수요인원은 무한정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관세국경에서 차단해야 할 관세인력의 부족은 크나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우편세관 일선에서 마약류 검색을 담당하는 인원의 확충은 필요불가결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차단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효과적인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단속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류에 대하여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등으로 병렬적으로 분산·중복 운영되고 있다. 이를 마약류 범죄의 밀수, 밀거래, 후속조치, 교육 등 마약류 범죄의 유형에 따라 조직을 특화하여 재편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경우

Collection

처럼 연방마약수사청으로 총괄되는 마약통제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마약에 대해 일관되고 집중적인 수사 및 통제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마약통제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세청, 식약처, 검·경찰 등으로 구분되는 규제조직은 해당 기관의 인력활용이나 정보공유, 그리고 통제수단의 복잡함으로 상당한 중복 수사를 존재시키고 결국에는 기관간의 갈등만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원적인 조직구조는 업무의 다양함과 중복으로 인해 전문성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마약류 범죄자체가 매우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밀수형태나 거래유형이 지금까지의 수사경험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고, 더욱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창출되는 새로운 경험 및 기법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를 위하여 총괄적이고 일원적 수사 조직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3 마약류 통제기관간의 협력 강화

선진국과 같은 하나의 일원화된 마약수사 및 통제기관이 당장 설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통제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정보공유에 대해서도 각자 기관의 비밀유지 등의 문제로 쉽사리 공유가 어렵고, 중복된 조사를 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초월한 기관 간 갈등도 가능하다. 또한 각 기관간의 실적 등 무리한 공적확보를 위한 과다경쟁 역시 우리나라의 기관협조에서 많이 드러났던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했을 때 집중적인 중심기관을 정립하고, 그 여타의 기관은 마약 밀수입에 대한 보

Collection

조체계가 바람직할 것이다.

4. 수사장비의 현대화 및 수사기법의 개발

마약거래는 이제 마약생산국으로 유명한 멕시코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적인 배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국적인 생산·거래·소비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결을 파악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수사장비나 수사관들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내의 마약수사는 외국과 관련되는 경우, 해외 당사 국가와 협약 등을 주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 범죄 협약은 일시적이고 대안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

현재는 C/S 선별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마약류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더 고효율의 X-RAY 장비 투입 및 일원적 마약수사조직을 성립하여 우리만의 수사기법 개발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 지역에 대한언어와 문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우편 등 소규모 개인 수취화물 중 의심이 되는 화물에 대한 선별 기법의 고도화를 위해 국내·외 최신 밀수 패턴을 신속 반영하여 선별 및 정밀 검색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또한 통제배달과 같은 수사기법을 타 국가와 공조하는 방안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더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송물품 고시 집행과정에서 검사 예외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견본품과 원자재·부자재(제11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세관 검사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악용될 수 있다.[33] 따라서 특송물품 고시상 검사생략 등 특혜규정을 축소하고, 무작위 방식의 검사 등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34]

Collection

5. 국제협력 강화

해외쇼핑몰을 통한 마약구매가 쉽사리 이루어지면서 마약류 밀수입을 국내에서만 막는다는 것은 뒤처지는 발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각 국가마다 마약류에 대한 통제기준이 다르기에 그러한 인식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마초는 우리나라에 불법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이기에 이러한 차이까지도 조율해서 규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화되는 마약범죄조직의 단속과 적발을 위하여도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적 마약조직들이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새로운 불법 마약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고도화·전문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게 된다면 인터넷이 특히나 발전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남용국가가 되는 오명을 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국제협력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주요 회의나 마약류 단속에 대한 협약 등은 국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국제회의 참가자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6. 목록통관대상물품 확대에 따른 불법통관 관리 강화

최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허위신고에 따른 불법통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도의 폐지와 신고제로의 전환으로 모든 전자상거래업체와 소비자들이

33) 이수진(2014). 해외직구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의 문제점 및 보완대책.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853호
34) 정재호 외(2012).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물품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Collection

모두 목록통관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적인 관세탈루 등 불법통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특별통관 대상업체의 과세가격, 사업유형 등 신고의 정확도, 정보제공의 성실도, 불법통관사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통관절차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통관 대상업체의 신고제로의 전환에 따른 신고요건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상의 특별통관 대상업체의 신고요건과 관련하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요건으로 운영시스템, 관련교육 이수, 자료보관, 필수업무 수행관련 매뉴얼, 수입불허 물품에 대한 사전확인 시스템, 반품 등 관련규정과 절차 공시, 고객 상담창구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너무 개괄적인 내용으로 특별통관 대상업체의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문제를 담보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해외직구에 따른 업무수행, 통관관련 의무이행 및 당사자 간의 분쟁발생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자본금 요건, 운영인력요건 등의 일정한 조건을 신고요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마약류 범죄자 후속 조치

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확대 및 사이트 사전 차단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콘텐츠 및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광고 등을 증가시켜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확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국내외에서 한국인이 국제범죄조직에 의해 마약류 대리운반에

Collection

이용되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적발 시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국제마약조직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호기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마약구매도 중범죄임을 홍보·교육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 쇼핑몰에서의 마약 구매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해외 쇼핑몰에 대한 통제 및 실시간의 지속적인 인터넷 모니터링 추적을 통한 불법사이트 직구 차단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의 인터넷 거래 차단방법 등을 개선하여 온라인 점검 대상을 블로그·게시판에서 SNS·스마트폰 앱까지 확대하고 단속인력 전문화를 위해 인터넷 추적 수사기법 교육 등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에 대한 사찰규모의 추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 마약류 해외쇼핑몰에 대해 해당국가의 마약 단속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사전에 단속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매년 마약 중독 및 마약 범죄가 줄지 않고 있고 재범률도 현격히 높아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담치료와 재활 치료 등이 시급하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마약 차단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소 퇴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보고기관 및 치료재활공동체와 연계한 가족상담 등 효과적 상담치료를 시행하고, 중독자들의 중독자 치료 지원도 활성화하는 한편 사회복귀교육 프로그램도 표준화시켜 중독자 치료 및 사회 복귀 교육 인프라의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다.

Collection

[표 Ⅳ-1]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재범 현황

연도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6.			합계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 사범	1,124	6,771	1,837	759	7,226	1,189	582	7,631	1,042	685	7,902	1,177	301	3,796	491	3,451	33,326	5,736
재범수	182	2,808	593	62	2,877	417	131	3,089	376	127	3,365	377	42	1603	170	544	13,742	1,933
재범률 (%)	16.2	41.5	32.3	8.2	39.8	35.1	22.5	40.5	36.1	18.5	42.6	32.0	14.0	42.2	34.6	15.8	41.2	33.7

자료 : 2014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3.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마약사범 검거 강화

마약류 생산국가에 대한 국제지원사업을 통한 국내 마약류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마약사범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도피하여 불법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도피사범에 대한 신원 정보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피사범에 대한 강제 송환 및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체제를 공고히 한다.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Collection

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최근 합리적인 소비의 확산으로 해외직구는 스마트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매방식 중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외직구(overseas direct purchases)란 인터넷이나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하여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해외직구는 과거부터 이용되어 왔으나, 구매대행업체 및 배송대행업체의 등장과 더불어 소셜미디어의 이용 확산, 스마트 소비자들의 확산 및 정부의 해외직구 활성화 추진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소비재의 독과점적 수입구조로 인해 수입가격과 판내가격 간의 격차가 크고,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에서의 판매가격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해외직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도 늘어나고 있다. 무분별한 밀수입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밀수출업자들은 해외직구를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롭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특송물품의 경우 물건을 허위신고 할지라도 실제 물품을 개봉하여 확인하지 않는 한 신고대로 들어온 것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법적인 해외직구도 증가하고 있다.

밀수업자들의 밀수품목 중에서도 마약류는 개인적 쾌락을 위한 무분별한 오남용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많은 폐해를 야기한다.

Collection

우리나라의 마약류 밀수 규모나 남용률 등은 유럽이나 미주 등에 비하여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메스암페타민 등 기존 마약류와 함께 신종 마약류 밀수지속, 공급루트 다변화, 사용계층 확산, 국제범죄 조직에 의한 중계밀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마약 청정국' 이라는 국제적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한편, 해외직구의 증가로 인하여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국제우편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통제하는 세관 등 정부기관의 가용자원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경 통제기관들은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보다 빠른 물류의 촉진과 마약류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입 중 마약류 공급의 차단 측면에서 해외직구의 방법 및 유형을 살펴보고,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수법을 분석하여 해외 주요 마약 공급처로부터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현재 소액물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세법 등 각종 고시에서 규정을 달리하고 있는 법률 등의 규정을 통일화하여야 한다. 해당 법률이 각각 제정되어 운영되면서 세부사항이 상충 또는 중복되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통합·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약류를 관세국경에서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전문 단속인력을 확충하고, 마약류에 대해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병렬적으로 분산·중복 운영하는 것을 통합·특화하여 재편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선진국과 같은 일원화된 마약수사 및 통제기관이 당장 설립 불가한 상황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통제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원활화 및 중복 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ollection

넷째, 마약류를 밀수하는 조직들의 수법은 점차 더 교묘해지고 있고, 해외직구가 많아짐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차단도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과 관련한 수사장비의 현대화 및 고도화와 지금까지 마약류 범죄를 통해 쌓아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기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해외 쇼핑몰을 통한 마약구매가 쉽사리 이뤄지면서 더 이상 마약류 밀수입을 국내에서만 막는다는 것은 뒤처지는 발상이 될 것이다. 각국가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류 사전 차단에 힘써야 한다.

여섯째, 최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허위신고에 따른 불법 통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바, 특별통관 대상업체의 과세가격, 사업유형 등 신고의 정확도, 정보제공의 성실도, 불법통관 사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게 통관절차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마약류 범죄자 예방 및 후속조치 마련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해외직구 발달로 마약밀수조직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일반인에게 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마약류 사이트를 사전에 발견하여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추적 수사기법의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마약류는 재범률이 현격히 높은 범죄행위인 만큼, 마약류의 사전 차단이나 예방 못지 않게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

셋째, 마약류 생산국가에 대한 국제지원사업을 통한 국내 마약류 유입 차단 뿐만 아니라 마약사범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도피하여 불법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도피사범에 대한

Collection

신원 정보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피사범에 대한 강제 송환 및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 범죄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해외직구 자체도 정부차원에서 통관을 간소화하고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 정책이고 누구나 손쉽게 범죄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범죄도 나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국제화·조직화 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밀수입 중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의 밀수입만을 다루고 있기에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위험물품의 검사 및 차단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많이 담겨 있다.

그렇기에 마약류를 단속·수사하는 관세청 외 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등 타 단속기관의 업무형태나 수사 기법, 역할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입 중 마약류에만 그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주로 개인에 의한 밀수입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다른 공산품 등을 조직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밀수입하는 조직단위 밀수입 문제는 다루지 않아 더 큰 분야의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입 단속현황이나 차단 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은 수학을 행한 후, 다음 연구로 미루기로 하였다.

해외직구 차단에 대한 관세청의 탐색기법 및 수사기법 등에도 본 논문에서 다룬 기법 외에 많은 기법이 있으나, 이를 본 논문에 모두 다룬다는 것은 대외비적인 성격이 커서 다 서술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Collection

끝으로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자체가 너무도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가 가지는 확산속도와 결과적인 마약류 중독문제는 차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 마약에 대한 통제정책은 현실적으로 국내의 제도 정비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분야임으로, 본 논문이 잠재적 범죄자 예방과 효과적인 차단을 위한 지침으로 학문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1945
한국해양대학교

Collection

참고 문헌

강중구·이혜림(2014). 해외직구 규모 아직 작지만 소비시장 장벽 허물어지고 있다. LGERI 리포트

김성(2015). 소비자특성이 해외직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김주호(2008). 근·현대사 한국의 시대적 밀수품목과 검거사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관세청(2015). 2014년 마약류 밀수 동향.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2015).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수입(해외직구) 동향. 관세청 보도자료

김철호(2014). 해외직구 관련 문제와 개선방안. 무역통상학회지

대검찰청(2013). 2012년도 마약류사범 단속결과. 대검찰청 보도자료

대검찰청(2014). 2013년도 마약류사범 단속결과. 대검찰청 보도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14). 해외직구 이용 실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14). 2015년 소매유통업 전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부산국제우편세관(2014). 국제우편물 실무매뉴얼. 관세청 내부자료

부산지방검찰청(2014). 개인정보 도용, 해외직구 배송대행 악용 '묶음배송' 방식 위조상품 밀수조직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수원지방검찰청(2014). 인터넷 이용 마약 밀수 사범 등 집중 단속. 수원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2014). 인터넷 이용 마약 밀수 사범 등 집중 단속. 수원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14). 해외직구 마약 밀수사범 등 집중 단속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2014). 해외직구 이용실태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2014).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신의기・강은영・이민식(2002).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연구총서, Vol.2002

여신금융협회(2015). 2014년 해외카드 이용실적 분석. 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

이수진(2014). 해외직구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의 문제점 및 보완대책.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853호

임대환(2000). 마약밀수단속의 효율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Collection

장광현(2013). 마약류 밀수동향 분석과 공급차단을 위한 관세국경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전략조사정보과(2007). 사이버밀수 개념 검토(안). 관세청 내부자료
정재호 외(2012).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물품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조병인(2003). 마약조직의 생존형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정건(2006). 국제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2014).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 한국소비자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4). 해외직구 트렌드와 카드사의 상품·서비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Collection